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독성 물질 통제국

# 공식 정책

언어 지원 정책

DTSC-XX-XXXX

주제/정책제목

공식 정책 번호

초고

발행일/유효일

이중언어 서비스 (DTSC-14-003) (2015년 2월 20일)

대체정책 번호

전 직원

민권 사무소

목표 대상

발행부서

Barbara A. Lee

국장

성명

직책

초고

서명

서명일

언어 지원 정책

날짜

DTSC-XX-XXX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DRAFT

## 목차

페이지

I.	정책 개요 .....	
II.	목적 .....	
III.	관계 법령 .....	
IV.	정책 시행 .....	
V.	정의 .....	
VI.	언어 지원 절차 .....	
VII.	문의 및 민원 .....	
VIII.	자료 .....	

## I. 정책 개요

**독성 물질 통제국 (DTSC)**에서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사람들이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를 조기에 신속, 공평하고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I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제한된 영어 소통능력으로 인해 중요한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의 사용시에 겪을수있는 불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 6 장, 행정 명령 13166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이중 언어 서비스법(Dymally-Alatorre)을 포함한 연방 및 주 민권법을 DTSC가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책 개발 시 DTSC는 아래의 요인을 포함해 다른 여러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 DTSC 정책 진행과정 동안 언어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유해 폐기물 혹은 오염된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사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대한(LEP) 정보를 수집하고그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
2.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LEP)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 그 확인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개발할 필요성
3. 캘리포니아주 환경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캘리포니아주 공공 자료 규정, § 21000 이하 참조)을 준수하기 위해 DTSC가 작성한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문서들을 포함해, 허가 및 환경정화 결정을 위해 DTSC가 준비한 중요한 기술 문서와 관련된 결정문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중요 문서들의 번역

4. 아래와 같은 요소를 지니며, 또한 민권법, 규정, 정책, 그리고 안내서를 준수하는 절차들을 따라서 하는 대중의 의미 있는 참여
  - a. 적극적인 대중의 참여를 막는 위협적인 행위와 적대적인 환경을 포함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분명한 금지
  - b. DTSC가 개최하는 대중 모임과 공청회의 통역과 그에 동반되는 시각 자료, 유인물 그리고 발표내용의 번역을 포함해 대중의 참여를 돕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과 공청회를 계획하고 개최하는 것
  - c. 워크숍, 모임, 초별 원고, 의견 제출기간 그리고 관련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해 영어와 다른 해당 언어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영어와 번역을 같은 페이지에 실어서 적시에 통보를 준비
  - d. 유해물 폐기 시설 혹은 오염된 지역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언어적 및 교육적 특징 수용

### III. 관계 법령

다음은 본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연방 및 주 법, 규정, 그리고 지침 목록의 일부입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 1964년 민권법 제 6장 (공공 자료 88-352 § 601 (1964년 7월 2일), 78 법령집.252)
- 행정 명령 13166, 65 FR 50121 (2000년 8월 11일)
- 이중 언어 서비스 법 (Dymally-Alatorre) (정부 규정, § 7290 이하 참조)
- 정부 규정 § 11135
- 보건 안전 규정, § 39711
-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제 6장에 관련된 연방 재정 보조 수혜자 대상 지침 (행정 명령 13166, 65 FR 35602 (2004년 6월 25일))
- 미 연방 환경부, 행정 명령 13166 준수: 제한된 영어 소통능력자에 대한 지원 향상, 2017년 2월 10일, (분류 번호 1000.32)
- 미 연방 환경부, 외부 민권 준수 관련서류 (2017년 1월 18일)
- 독성 물질 통제국, Kettleman 제 6장 합의서, 2016년 8월 10일.

#### IV. 정책 시행

이 정책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DTSC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맞는 언어 지원 계획을 'DTSC의 민권 시행 계획'의 내부 조항에 포함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유해 폐기물 허가 결정, 집행, 추가 환경 프로젝트, 정화 계획, 그리고 보조금 및 기타 자금 지원 기회등과 관련된 언어 지원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V. 정의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어 정의가 사용됩니다.

- a. 이중언어자: 두 언어에 유창하고 영어와 다른 언어에 능통한 사람.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 7296 참조)
- b. 통역하다/통역: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의미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행위.
- c.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Limited English Proficient):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일차 언어로 하는 사람으로 그 제한된 영어 소통능력으로 인해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일차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사람.
- d. 민원 상담 직책: DTSC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중을 만나고 접촉하고 보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DTSC가 판단한 직책 (캘리포니아주 정부 규정, § 7297)
- e. 번역하다/번역: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자가 문서에 원활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한 언어의 문서를 다른 언어로 된 문서로 바꾸어 주는 행위.
- f. 중요 서류 혹은 정보: DTSC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정보. 문서나 정보의 중요성 여부는 프로그램, 정보 혹은 서비스의 중요성과 함께 문서가 번역되지 않았을 때 영어가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원활하지 않은자에 끼치는 영향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중요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같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VI. 언어 지원에 관한 절차

DTSC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를 조기에 공평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 a. 일반적인 LEP 서비스:

영어에 원활하지 않은 자가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를 이용하는 데 경험하는 불편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DTS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1. 이중 언어 서비스법 (Dymally-Alatorre), 정부 규정, § 7290 이하 참조에 따라, 영어가 아닌 언어로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이중언어 유자격자를 민원 상담 직책에 고용합니다.
2. DTSC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비영어 필요성과 일차 언어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해 '격년 언어 조사'에 참여합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3. DTSC 정화 프로젝트,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 결정, 시행 활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른 DTSC 활동에 관련되어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의 원활한 공공 참여를 촉진케 하는 조항을 DTSC의 '대중 참여 안내서'에 포함합니다.
4. 번역된 자료나 통역 서비스등을 포함하여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DTSC의 언어 지원 서비스 정책을 이용 할 수 있음을 알린다.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DTSC 지역 사무소에 영어와 다른 언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정책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단체 및 조직과 협업하여 언어 지원 서비스 정책을 알리며, DTSC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영어외 다른 언어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5. 모든 해당 DTSC 정책, 절차, 입찰, 보조금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주 및 연방 민권 그리고 언어 지원의 필요성을 병합합니다.
6. 주 및 연방·민권 그리고 언어 지원의 필요성을 모든 DTSC 계약자, 하청업자 그리고 주·연방 보조금 수혜자에 알립니다 .

c. 중요 문서 및 정보의 번역

DTSC는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에 관련된 중요 문서나 정보를 번역할 것입니다. 어떤 문서의 경우 중요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모두 들어 있는데, 이 경우 중요 정보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문서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자의 수 및 비율, (2)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보를 접속하는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자수, (3)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혹은 정보가 대중의 삶에 미치는 성격 및 중요성, 그리고 (4) DTSC가 쓸 수 있는 자원과 번역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서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문서에는 유해 폐기물 시설과 오염된 장소와 관련된 기술 문서 및 다른 문서를 포함해 DTSC 결정과 활동문서,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을 대중이 완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서 등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그 일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 행정 양식
- 신청 양식
- 민원 양식
- 편지
- 새 정보 소식
- 지역 사회 새 소식
- 방문지원 서비스 (Outreach) 및 교육 자료
- 허가 문서
- 공공 통지 및 신문 통보
- 사실 보고서
- 기술 문서
- 캘리포니아주 환경법(CEQA) 에 따라 작성한 환경 문서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중요 문서 및 정보의 결정은 'DTSC의 민권 시행 계획'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d. 번역된 문서 지원:

1.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를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자가 조기에 공평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각 DTSC 지역 사무국에 번역된 문서를 제공합니다.
2. DTSC 서비스나 혜택에 관련된 공공 권리, 의무 또는 특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어와 다른 언어로 각 DTSC 지역 사무국에서 지원합니다.
3. DTSC는 번역된 문서를 DTSC 웹사이트에 제공합니다.
4. 사무국의 '대중 참여 정책'과 'DTSC의 민권 시행 계획'과 일치하도록 DTSC는 번역된 자료를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b. 통역 서비스:

DTSC 주최 모임, 공청회 그리고 공공 행사를 포함해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에 관련된 통역 서비스를 DTSC는 제공할 것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1)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영어가 원활하지 못한 자의 수나 비율, (2)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자가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보를 접속하는 빈도수, (3)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혹은 정보가 대중의 삶에 미치는 성격 및 중요성 그리고 (4) DTSC가 쓸 수 있는 자원과 번역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

DTSC는 해당 언어에 유창하며 공인을 받았거나 자격을 갖춘 통역자를 이용할 것입니다. DTSC는 다음의 조건을 통역자가 갖추게 할 것입니다.

- 영어와 다른 언어에 능통하고 그 두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적절한 형태로 통역(예: 순차, 동시, 요약 혹은 문서 통역-)을 할 수 있다.
-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활동에 쓰여지는 전문적인 용어, 개념, 어휘, 문장등에 대해 두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지녀야 한다.
- DTSC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기밀 및 공평의 원칙을 이해하고 지키며 존중의 문화와 조기에 공평하고 원활한 소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DTSC의 기대를 만족하게 한다.
- 통역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따른다.

e. 인사 및 직원 교육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의 활동을 통해 DTSC는 존중의 문화와 함께 핵심 DTSC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및 정보에 대해 조기에 공평하고 원활한 소통을 활발하게 촉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1. DTSC 행정 서비스실을 통해 구체적인 직책 임무에 맞게 채용공고, 고용, 직원 교육 및 평가시 언어지원필요성을 고려합니다.
2. DTSC 행정 서비스실을 통해 이중 언어 공인 시험을 제공하고, 공인 받은 이중언어 구사 직원과 그 언어 목록을 보유합니다.
3. 캘리포니아주 인사부(CalHR) 공무원 규정 및 기타 해당 지침에 따라 공인 이중 언어 사용직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4. 행정 서비스실을 통해 민권 사무국과 협력해 언어 지원 필요성 및 과정, 방법 그리고 이런 필요성을 만족하게 하는 자원을 포함해 다양성 및 포용, 민권 및 언어 지원에 대한 교육을 DTSC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도구, 언어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과정의 인식등의 교육이 이루어 집니다. 교육과 연수에서는 의사소통, 이해, 파트너십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이 강조됩니다.

## **VII. 문의 및 민원**

이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DTSC 민권실로 (916) 324-3094로

*이 문서는 DTSC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ocr@dtsc.ca.gov](mailto:ocr@dtsc.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민권실 팩스 번호는 (916) 322-2844이며, 편지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Attn: Office of Civil Rights  
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  
1001 "I" Street, 12<sup>th</sup> Floor  
Sacramento, CA 95814

DTSC가 만족스러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의사소통 지원 해결 양식'(양식 1602)을 DTSC 민권실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DTSC '의사소통 지원 해결 양식'이 이 정책에 첨부물 A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DTSC '의사소통 지원 해결 양식'은 DTSC 웹사이트([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pdf](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pdf) (영어) 또는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E.pdf](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E.pdf) (스페인어))에서 이용하시거나 DTSC 민권실 (916) 324-3094로 전화를 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DTSC의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주 인력 위원회 (866) 889-3278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자신이 이 정책의 위반이나 연방 및 주 민권법을 어긋난 차별 대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DTSC 웹사이트([\\_\\_\\_\\_\\_](#))서 제공하는 민원양식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출하시거나 DTSC 민권실 (916) 324-3094에 전화를 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DTSC 민권 정책, DTSC-XX-XXXX (날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는 DTSC 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토론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 VIII. 자료

- DTSC 의사소통 해결 양식 (양식 1602):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pdf](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pdf) (영어)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E.pdf](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upload/DTSC_1602E.pdf) (스페인어)
- 서비스 거부에 대한 DTSC 민원 양식: \_\_\_\_\_
- DTSC 대중 참여 설명서:  
<https://dtsc.ca.gov/LawsRegsPolicies/Policies/PPP/upload/DTSC-PublicParticipationManual.pdf>
- 번역된 DTSC 출판물 목록: <http://dtsc.ca.gov/PublicationsForms/index.cfm>